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068호
- 나. 제 안 자 : 서울특별시장
- 다. 제안일자 : 2024년 8월 12일
- 라. 회부일자 : 2024년 8월 13일

2. 제안이유

- 시청자의 미디어 접근권을 제고하고 권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서울시, 성북구청, 시청자미디어재단 간 「서울 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함(2015. 12. 15.).
- 업무 협약에 따른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출연 여부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사 업 명 :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 나. 위 치 : 성북구 길음로7길 20, 서울성북미디어문화마루

다. 규 모: 지상 1~3층(연면적 2,925.23㎡, 전용 1,791.1㎡)

라. 사업주체: 시청자미디어재단(방송통신위원회 산하 기타공공기관)

마. 주요시설: 디지털교육실, 장애인방송제작실, 편집실, 사무실 등

바. 주요사업

- 미디어 교육 지원: 미디어체험 프로그램, 콘텐츠 제작 교육 등
- 시청자 방송참여 지원: 방송제작을 위한 시설장비 무료대여 등
- 소외계층 방송교육 지원: 장애인 방송 서비스 제작 지원 등

사. 출연금액(안): 292,100천원

-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 총운영비(1,460,500천원)의 20% 분담
(인건비 80,300천원, 경상비 211,800천원) ※ 사업비 제외

아. 출연의 필요성

- 서울시민의 미디어 접근권을 제고하고 권익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
하기 위해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에
따라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의 운영비 지원 필요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

제4조(운영비 부담) ①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운영비는 센터 구축에 필요한 신규
시설장비와 관련된 비용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부담한다.

1. 방송통신위원회는 운영비의 60%를 부담한다.
2. 서울특별시와 성북구는 각각 운영비의 20%를 출연한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방송법」 제90조의2

제90조의2(시청자미디어재단)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2025회계연도 예산편성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강옥심)

가. 동의안의 개요

○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방송법」 제90조의2에 따라 시청자의 방송 참여와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전국 12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음¹⁾.

이 중 서울센터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시청자 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시는 해당 협약에 따라 운영비의 20%를 출연하여야 함.

○ 이에 서울시는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출연 여부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음.

1)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방송법」 제90조의2에 따라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기관으로서 현재 부산, 광주, 강원, 대전, 인천, 서울, 울산, 경기, 충북, 세종, 경남, 대구 등 12개 지역센터를 운영 중이며, 운영비는 각 협약상 부담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부담하고 있음.

나. 출연의 개요

(1) 서울센터 설립·운영 현황

- 2015년 6월 개관한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는 서울 지역의 미디어교육, 장비대여, 시설대관, 제작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미디어 복지 향상과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를 위해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2017년부터 출연금을 분담하고 있음.

-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은 2015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시, 성북구 등 4자 간에 체결된 협약으로서, 협력분야, 설립공간, 운영비 분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최초 협약에 따라 서울센터는 당시 신축 예정이었던 길음동 복합문화시설(現 서울성북 미디어문화마루) 내에 입주하기로 하고, 성북구 관내 노블레스 빌딩에서 임시 운영되어 왔음.

- 이후 2018년 하반기 중 완공 예정이었던 길음동 복합문화 시설의 공사가 지연되면서 2020년 하반기까지 임시운영하도록 개정된 협약이 체결되었으며(2018. 8.),

2020년 8월 센터 이전 후 11월, 임시운영 조항이 삭제된 협약이 다시 체결되었음.

- 현재 서울센터에서 근무 중인 직원은 11명(정원 12명)으로, 서울 성북 미디어 문화마루 지상 1~3층(연면적 2,925.23㎡)을 사용하고 있으며, 2024년도 예산은 18억원임²⁾.

(2) 출연의 규모

- 출연은 협약에 따라 사업비를 제외한 운영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25년도 출연의 규모는 기준액인 올해 운영비 14억 6천1백만원 중 서울시 부담률인 20%를 적용한 2억 9천2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2백만원(△0.7%) 감액되었음.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2020. 11.)

제4조(운영비 부담) ①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운영비는 센터 구축에 필요한 신규 시설장비와 관련된 비용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부담한다.

1. 방송통신위원회는 운영비의 60%를 부담한다.
2. 서울특별시와 성북구는 각각 운영비의 20%를 출연한다.

- 운영비는 2020년 센터가 서울성북 미디어문화마루로 이전하면서 노블레스 빌딩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이전 대비 전용면적, 시설, 인력 등이 확대되면서 운영비가 크게 증가하였고, 이후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현황 >

(단위 : 천원)

연 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안)
운영비	843,500	1,452,300	1,428,300	1,479,700	1,460,500	1,460,500
서울시출연금	159,388	286,689	285,660	295,940	294,020	292,100
출연금증감액	71,650 (81.7%)	127,301 (79.9%)	△1,029 (△0.4%)	10,280 (3.6%)	△1,920 (△0.6%)	△1,920 (△0.7%)

2) 2024년도 예산(1,800,330천원) = 운영비(1,460,500천원) + 사업비(339,830천원)

다. 출연의 타당성

-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는 서울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미디어를 바로 알고 방송, 영상, 인터넷 등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공공미디어 기반시설로,

‘지난 5개년 간 서울센터 이용자 현황’을 살펴보면, 총 이용자 수는 2019년도 49,396명에서 2023년도 135,488명으로 증가하는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어 전체 수익자가 확대되었다는 측면에서 출연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 지난 5개년 간 서울센터 이용자 현황 >

구 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총 이용자 수	49,396명	87,786명	110,418명	127,658명	135,488명
학교미디어교육 이용자 수	12,385명	57,758명	29,727명	26,283명	46,491명
사회미디어교육 이용자 수	11,538명	10,864명	17,652명	21,892명	12,876명
미디어체험 연인원	2,065명	5,443명	3,539명	4,785명	5,877명
서울지역 미디어교육지원 학교 수	34개	29개	34개	24개	24개
시청자참여프로그램 건 수*	10개/3,448분	15개/3,907분	10개/4,383분	436건	518건

* 2021년도 이전에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작방송사/분량’으로 실적을 집계함

- 다만, 세부항목 중 사회미디어교육 이용자 수와 미디어교육지원 학교 수가 정채된 점을 고려하면,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강화와 미디어 소외계층 증가에 대한 대응책으로서의 역할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지난 3년 간 종합만족도

점수가 상승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주요 항목별 만족도에서 ‘장비’ 분야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향후 장비의 개선을 위한 사업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지난 3개년 간 서울센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

연도 \ 서울센터	종합만족도	주요 항목별 만족도			
		미디어교육	강사	시설	장비
2021년	87.4	87.9	88.6	91.8	84.7
2022년	88.3	90.4	91.5	93.9	83.7
2023년	89.3	89.9	91.4	93.8	83.0

- 협약 제6조에 따르면 센터는 운영에 대한 지역 참여와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발전협의회를 두고, 센터의 자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그 구성에 관여할 수 있음.
- 그러나 매년 3회 협의회를 개최하고 연도별 사업 결과 및 계획 보고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서울센터의 사업비는 오히려 하락세인 것을 고려하면, 협의회는 서울센터의 운영에 실효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 2021 ~ 2024년도 서울센터 사업비 현황 >

(단위 : 천원)

구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사업비	373,100	376,490	364,455	339,830

- 따라서 서울시는 발전협의회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과 더불어 기타 행사 가능한

권한을 모색함으로써 서울시민의 미디어 이용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전문위원	임창균(2180-8113)	입법조사관	심형준(2180-8116)
------	----------------	-------	----------------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

방송통신위원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하여 협력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방송통신위원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청자미디어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협력하여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립·운영함으로써 시청자의 미디어 접근권을 제고하고 권익을 증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분야) 방송통신위원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단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필요한 경우 세부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방송통신위원회는 센터 설립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을 구축하고 미디어에 관한 교육,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 지원 등 방송법 제90조의2 제4항에 규정된 사업을 하는 센터를 운영한다.
2. 서울특별시와 성북구는 센터 설립에 필요한 적정공간을 제공하고, 센터 설립 및 운영에 대해 협조·지원한다.
3. 재단은 센터가 서울 전역의 시청자미디어지원 관련 사업의 허브 기능을 수행하도록 협력한다.

제3조(설립공간) 센터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1286-8 서울성북미디어문화마루 내에 설립한다.

제4조(운영비 부담) ①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운영비는 센터 구축에 필요한 신규 시설장비와 관련된 비용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부담한다.

1. 방송통신위원회는 운영비의 60%를 부담한다.
 2. 서울특별시와 성북구는 각각 운영비의 20%를 출연한다.
- ② 운영비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상호 사전 협의한다.

제5조(관리 및 운영) 방송통신위원회는 센터 관리·운영을 재단에 위탁하며,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재단 소속 직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발전협의회 구성) ① 센터 운영에 대한 지역 참여와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센터 발전협의회를 둔다.

② 발전협의회는 관계 행정기관, 교육기관, 미디어 관련 학계·단체·업계 인사 등으로 구성하며, 방송통신위원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추천 및 의견을 반영한다.

③ 발전협의회는 센터의 사업·정책·예산 등에 관한 자문 기능을 수행하며, 운영에 관하여는 재단의 정관 등 내부규정에 따른다.

제7조(분쟁해결) 본 협약에 대한 해석상의 이의나 분쟁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소송의 관할은 센터 소재지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8조(협약서의 효력)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종료 합의가 있을 때까지 지속된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를 4부 작성하여 당사자 별로 아래에 직인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11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서울특별시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 1부 시장



시청자미디어재단
Community Media Foundation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성북구청
SEONGBUK-GU OFFICE

성북구청장

